

화학물질관리 규정

제정·개정 이력	
2026.01.01	최초 제정
담당부서	관리부

I. 화학물질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클린포트의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화학물질 사용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생산 능력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주)클린포트 전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며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을 말한다.
3. “위험물”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화학약품을 말한다.
4. “유해성”란 화학약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약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5. “위해성”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약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6. “지정수량”란 화학약품 종류별 위험성을 고려해서 신고 또는 허가 등을 관계기관에 하는데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7. “취급”이란 화학약품을 제조, 수입,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취급시설”란 화학약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9.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제4조 (협조의 요청 등) ①(주)클린포트의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부서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임직원 및 협력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②(주)클린포트의 임직원 및 협력사는 본사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부서의 권고 또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고예방책임) (㉸)클린포트의 전 직원은 화학물질사고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클린포트는 법에서 정하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회사의 전 직원은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주 및 화학물질 관리업무 부서가 실시하는 사고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6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4.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제7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①“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②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관계법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요구하는 조치, 협력 및 교육 사항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화학물질 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 부서는 교육기관 및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 ①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대상자별 시간은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과 같다.

②대상자별 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 ’와 같다.

제10조(교육기록 보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실시자
3. 교육과정
4. 출석인원
5. 교육내용
6. 그 밖의 교육실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개인보호구)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성능기준에 맞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5장 화학사고 대응

제12조(화학사고 발생신고) ①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시설의 가동중지 등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취급자가 시설의 화학물질 누출 등 화학사고를 발견한다면 즉시 관리부서장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보고받은 자는 15분 이내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 년마다 16 시간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 년마다 16 시간(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 년마다 8 시간)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 년마다 16 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 년마다 8 시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매 2 년마다 16 시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매 2 년마다 16 시간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

대상자	교육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분류·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라.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이동, 취급, 보관·저장 시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바.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사.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